

사업장대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입사지원서 작성시 ① 출신지역, ② 가족관계, ③ 학력(학교명), ④ 성별 ⑤ 생년월일(연령) ⑥ 사진, ⑦ 혼인여부, ⑧ 신체적 조건(재산·키·체중 등) ⑨ 종교 등에 개인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자격증: 사진, 주민등록번호(전체)를 가린 후 스캔하여 제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사용금지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수행업무	근무지
환경, 화학(화공) 컴퓨터, IT, 전자, 정보(통신)	촉탁라급	3명	「IoT 활용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본사 (인천 서구)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공통사항 [첨부1] 참조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채용자격 [첨부2] 참조	· 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점사항 [첨부3] 참조	· 법정가점 · 특별가점 · 그밖의 가점
우대사항 [첨부4] 참조	· 채용분야(직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한 자)

3. 근로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 ~ 2026.12.31.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9~18시, 휴게시간 12~13시)
보 수	· 월 2,421,050원(기준상여금, 직무수당 등 포함, 그 외 수당(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 가입(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복무 등 기타사항	·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 변경에 따른 촉탁직 근로자 기준급(보수) 금액 변동 가능

4. 전형절차 및 방법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4.20.(월) ~ 2026.5.6.(수) 18:00 (마감시간 준수)
- (접수방법) 전자메일(krh9500@kec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평가방법 :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 선발
 -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합격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5월 중 개별 통보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일에 제출

□ 면접전형

- 일시/장소 :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5월 중~말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 업무수행역량, 지식·경험, 성실성(근면성, 책임감), 대인관계(협동성, 적극성, 리더쉽)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가점 포함)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수) →서류전형 고득점자
- 합격발표 : 5월 중~말 예정(합격자 개별통보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 채용과정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내용의 적정여부, 채용 전형 단계별 주요 내용 등을 점검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전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미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여부 :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검토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발표 : 5월 말(합격자 개별통보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선정 : 입사포기 등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선정(단, 채용예정인원이 1인일 경우 2배수 운영)
 - ※ 예비합격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하여 적용

5. 제출서류

- ◆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생성하고 파일명에 성명을 기재하여 공지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_입사지원서
-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오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밝힙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기
입사 지원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서식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3] 1부 - (블라인드 처리된) 채용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1식 		
채용 자격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블라인드 처리 필요)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 학교명 반드시 블라인드처리 필요 (학교 직인에 학교명 확인) - 경력이 있는 자 추가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각 1부 		
가점 증빙 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보훈지청에서 발급) ※ 제출처란에 ‘한국환경공단’ 을 반드시 명시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보훈카드 등은 불인정 	원서접수 기간 제출
	의사상자 및 유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증명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 단,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포함)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미인정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 단,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 확인서 반드시 제출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 	
	자립준비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우대자격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격증 사본(블라인드 처리 필요) 		
채용 확정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원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채용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격 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자격 증빙서류의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 인정하며, 자격증은 발급기관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에 한하여 인정(화면캡처(x))

□ 채용서류 반환안내

-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청구 가능
-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서류·방법) 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4] 작성 및 전자메일 접수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단, 채용 확정자의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및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대상 제외

6.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자격,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입력 오류, 허위 등록 등에 따른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단체명(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개인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단, 응시자의 전형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분야의 주요 직무수행내용, 상세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직무 기술서[첨부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관련 민원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 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장대기통계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담당자(032-590-4028)로 연락** 바랍니다.

채용 청탁 금지 안내

- ◆ 한국환경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채용 전형에서 제외하고 합격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내 K-eco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사실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첨부2]

□ 한국환경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 기준

구분	채용자격기준
촉탁직“라”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및 ‘당해분야’란 채용분야(직렬)의 **환경, 화학(화공), 컴퓨터, IT, 전자, 정보(통신) 관련 분야(학과)**를 의미하며 위 자격 기준 미달 시 채용불가

[첨부3]

□ 가점사항

구 분		가산비율
1.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특별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의 가점	여성(경력단절여성 포함)·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등 국가 정책에 따라 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만점의 5% 이내 (서류전형에 한함)

※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채용인원 4명이상일 경우 법정가점 적용)

※ 가점 부여는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 상기 가점은 각 부문별 가장 유리한 1개씩, 합산하여 최대 15% 내에서 인정.

[첨부4]

□ 우대사항

구분		점수	비고
환경·화학(화공) 컴퓨터,IT, 전자,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환경)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수질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 (화학(화공))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등 - (컴퓨터, IT, 전자,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작 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SQL개발자	기사	배점의 100%
	- (환경) 대기환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 (컴퓨터, IT, 전자, 정보(통신)) 정보보안산업기사	산업기사	배점의 50%
차량운전 가능여부	- 운전면허증		배점의 100%

※ 채용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인정범위 및 기준은 공단 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정한 바를 준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최고자격 1개만 인정

[첨부5]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 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첨부6]

□ 직무기술서

○ IoT 활용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업무 정의) 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지원 등
- (상세 내용)

구 분	상세 내용
주요 사업분야	IoT 활용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주요 직무수행내용	시스템 데이터 관리지원 및 사업장 기술지원 등
필요지식	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종류 및 원리 나. 전류계 등 계측기 종류 및 원리 다. IoT계측기 전송값 데이터 분석 등 라.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구조 관련 개념
상세 업무	가. 데이터분석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계측기 전송값 분석 등 나. IoT 계측기 부착사업장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계측기 및 통신장비 설치 적정성 확인(출장업무) 다. 전송장비 기능시험 지원 및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W개발사 시험일정 관리 및 SQL작성, 서버 관리 등

[서식1]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한글(워드)프로그램 활용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작성내용과 증빙서류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지원분야 : 환경, 화학(화공)
2.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3. 성명 · 이메일 · (휴대)전화, 주소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교육, 자격사항, 경력은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경우만 작성
5. 자기소개서 작성시에는 지원자 본인의 성별, 출신학교, 출생지, 가족의 직업 등 편견을 유발 할 수 있는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라며, A4용지 최대 2매 이내로 작성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환경,화학(화공)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전화번호	
	(한자)	전자우편	
현주소			
우대사항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관련 /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관련 / <input type="checkbox"/>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 <input type="checkbox"/>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 <input type="checkbox"/> 5·18 민주유공자 관련 <input type="checkbox"/>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input type="checkbox"/> 취업보호대상자(의사상자 관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여성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자립준비청년		
<input type="checkbox"/> 군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 여성의 경우 면제를 선택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중졸이하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전공학과:)	
<input type="checkbox"/> 대졸 (전공학과:)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졸 (전공학과:)	

3. 교육사항		
* <u>지원직무 관련</u>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시간

직무관련 주요내용

4.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운전면허포함)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yyyy.mm.dd
		yyyy.mm.dd
		yyyy.mm.dd

5. 경력사항

*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 붙임 : 1.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4. (블라인드 처리된) 채용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1식.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_____(인)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관련 경력 / 경험 / 교육 · 훈련 사항

지원동기

본인 장점 및 특기사항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한국환경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 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증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입사지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서식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서식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